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9.

발 의 자 : 민병덕 · 김영배 · 황정아
조계원 · 이광희 · 양부남
장득구 · 김현정 · 황명선
윤후덕 · 안태준 · 이수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.

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

항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본문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을 “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) ① (생 략)	제17조(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</u> 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 다)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 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	② 「 <u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 2조제2호의 공공기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